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2024.4.27.)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등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개정)

-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부모견을 추가
-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설)

-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2) (제정 사유) 맹견수입시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설)

-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내 동물등록증, 책임보험 증서, 중성화수술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물림사고 방지

등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시행규칙 제12조의4 신설)

-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지 등에 필요한 이론교육, 실습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2) (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 이후 교육 등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시행규칙 제12조6 신설)

-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문 표시 등을 명하도록 함
- 2) (제정 사유) 맹견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 1) (제정 주요내용)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질평가 내용(양육실태조사, 맹견 공격성, 소유자 통제능력 분석 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2) (제정 사유)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맹견의 공격성 등 기질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됨

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4~6 신설, 시행규칙 제13조의5~11 신설)

- 1) (제정 주요내용)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등급구분·응시 자격·시험방식·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2) (제정 사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자격 시험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 맹견취급영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40조의2 신설)

-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증, 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2) (제정 사유) 맹견 취급 영업허가에 대한 절차, 시설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맹견영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도모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갱신제 신설, 표시기준 마련 등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 2) (제·개정 사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인증체계 및 절차 정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

제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제1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 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수입일”이라 한다)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수입신고서를 검역증명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맹견의 품종
2. 수입하려는 맹견의 수
3. 맹견의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4. 수입일
5. 수입 목적
6. 수입한 맹견의 사육 예정 장소

③ 제1항에 따른 맹견수입신고는 동물정보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맹견이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사본
2. 제13조의 책임보험 증서 사본
3. 해당 맹견의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일 이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중성화수술 불가 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19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각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해당 맹견이 8개월령에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31조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법 제70조에 따른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 또는 제2호

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의2(기질평가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등)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
의 소유자에게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 임기는 2년으
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질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며, 법 제26조제1항제
2호에 따른 기질평가는 6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대상으로 실시한다(6
개월령 미만인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는 제외한
다).

1. 해당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설문

2. 양육 및 훈련 현황 등 사전조사

3. 해당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분석하고 해당 동물의 공격성 등 평가

4. 그 밖에 해당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분석하고 해당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질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질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시험의 2차 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되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자격시험의 등급별 구분기준,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⑤ 법 제31조제3항제1호·제2호에 따른 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이외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과 관련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위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 및 보수교육 경비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및 보수교육 이수자에게 받을 수 있다.

제14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위탁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인증기관)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23조의3(맹견취급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을 생산·수

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취급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증

2.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취급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증

2. 영 제23조의3에 따른 영업의 허가증

3. 제1항제2호에 대한 변경사항

③ 그 밖에 맹견취급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3항제6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21조 및 제22조”로, “출입금지”를 “관리 및 출입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3호로 한다.

8의2. 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

제29조제1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8까지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5의3.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신청의 접수

5의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5의5.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5의6.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송차량 및 도축장의 지정

5의7.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

5의8.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受理)

7의2. 법 제92조제6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처분에 관
한 청문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제7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제2항제10호”를
“제2항제10호부터 제11호까지”로, “제8호·제9호”를 “제8호부터 제11호
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
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
호) 중 “법 제101조제2항제18호”를 “법 제101조제2항제1호·제18호”로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 접수·관리

제32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업의 종류 등

제34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1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31조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1의6.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70조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운영자: 하차대, 계류장, 기절시설
통로, 방혈대

별표 3 제1호라목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목(종전의 마목)에 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전시업: 전시실, 휴식실

마.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1) 동물판매업 : 사육실, 격리실, 경매실, 준비실

2) 동물장묘업: 화장(火葬)시설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

시설

3) 동물생산업: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4) 동물수입업: 사육실, 격리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의2.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	----------------	-----	-----	-----

별표 4 제2호의 위반행위를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타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파목으로 하고, 중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거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너목1)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너목2)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너목3)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너목4)로 한다.

별표 4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의2. 소유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개의 훈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너의3. 소유자등이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된 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5호	30	50	100

별표 4 제2호의 위반행위를 더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러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버목으로

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임수의사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	-----------------	-----	-----	-----

별표 4 제2호의 위반행위를 저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처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커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터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퍼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허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고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노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도목으로 하고, 같은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10호	20	40	60
도의3. 법 제67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제8호	100	300	500
도의4. 법 제67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1호	50	100	200
도의5.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11호	30	50	100

별표 4 제2호의 위반행위를 로목으로 하고,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의2. 영업자가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 취급의 사실을 신고하	법 제101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	-----------------	-----	-----	-----

지 않은 경우
별표 4 제2호의 위반행위를 모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보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소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오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조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초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코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토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포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호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구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누목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위반행위를 두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루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무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부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수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우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주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추목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를 쿠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를 투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202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 (제14조의4제4항 관련)

1. 응시자격

등급	자격기준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만 18세 이상인 자

2. 등급구분 및 시험과목

구분		1급	2급
등급			
가. 등급구분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나. 시험과목	1차 시험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2차 시험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3. 합격기준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1급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2급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나. 2차 시험 시 해당 등급에 대한 자격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을 지참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응시자격 검증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 등 기타 시험방법에 대한 사항은 위탁기관에서 마련한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 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2. (생 략) <u><신 설></u>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 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 으로 기르는 개</u>
제5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 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단 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5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 관</u>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9. (생략)

<신설>

② ~ ⑧ (생략)

<신설>

-----.

1. ~ 9. (현행과 같음)

10.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수입일”이라 한다)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수입신고서를 검역증명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맹견의 품종

2. 수입하려는 맹견의 수

<신 설>

3. 맹견의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4. 수입일

5. 수입 목적

6. 수입한 맹견의 사육 예정 장소

③ 제1항에 따른 맹견수입신고는 동물정보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맹견이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사본

2. 제13조의 책임보험 증서 사본

3. 해당 맹견의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일 이전 14일 이내에 발
급된 중성화수술 불가 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19조제3호 본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
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
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신청인 각각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해당 맹견이 8개월령에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신청서를 제출받
은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1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

<신 설>

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31조에 따른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법 제70조에 따른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제14조의2(기질평가에 따른 교육 이수 또는 훈련 명령 등)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
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질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며,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질평가는 6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대상으로 실시한다(6개월령 미만인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설문

2. 양육 및 훈련 현황 등 사전조사

3. 해당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분석하고 해당 동물의 공격성 등 평가

4. 그 밖에 해당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분석하고 해당 동물의

<신 설>

공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
질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질평가의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은 법 제31조제1
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1급 및 2급으로 구
분하여 시행한다.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한다.

③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
제한다. 다만, 1차 시험에 합격

<신 설>

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시험의 2차 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되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자격시험의 등급별 구분기준,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⑤ 법 제31조제3항제1호·제2호에 따른 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이외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

격과 관련하여 위탁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
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2에 따른 농
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
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
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
는 경우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위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세부
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수수료

<신 설>

제16조(공고) ①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 사실을 공고하려
면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
및 보수교육 경비를 반려동물행
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및
보수교육 이수자에게 받을 수
있다.

제14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
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위탁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
항에 따른 시험 관리업무의 원
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시험
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시험장소의 질
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공고) ① 시·도지사-----

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전임수의사) ①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가.·나. (생 략)

다. 실험동물의 고통등급

②·③ (생 략)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전임수의사)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동물실험-----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인증기관)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

<신 설>

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
립된 비영리법인

제23조의3(맹견취급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
급”이라 한다)하는 영업을 하려
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취급허가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
가증

2.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
명하는 서류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27조(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법 제22조에 따른 맹견의 출
 입금지에 대한 감독
 7. • 8. (생 략)
<신 설>
 9. ~ 12. (생 략)
 13.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취급변경허가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
 가증
 2. 영 제23조의3에 따른 영업의
 허가증
 3. 제1항제2호에 대한 변경사항
 ③ 그 밖에 맹견취급허가의 절
 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1조 및 제22조-- 관리
 및 출입금지 등--
 7. • 8. (현행과 같음)
 8의2. 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
 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
 장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
 9.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2024년 4월 26일까지 적용되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맹견의 관리에 관한 감독

14. (생략)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3.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5의3.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신청의 접수

5의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5의5.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5의6.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송차량 및 도축장의 지정

5의7.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 설>

6. · 7. (생 략)

<신 설>

8. · 9. (생 략)

10.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0
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 제9호, 제2
2호부터 제2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 · 징수

11. · 12.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
다.

<신 설>

1. (생 략)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
소

5의8.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
리(受理)

6. ·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92조제6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
소처분에 관한 청문

8. · 9. (현행과 같음)

10.-----
제8호까지----- 제2항제10
호부터 제11호까지-----
----- 제8호부터 제11호까
지-----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

1.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
신고 접수 · 관리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u>법 제101조제2항제18호</u> 및 같은 조 제3항제1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2조(공개대상정보 등) ①·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3. <u>법 제101조제2항제1호·제18호</u> --- 제32조(공개대상정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영업의 종류 등</u>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u>
---	---

<u><신 설></u>	<u>입신고에 관한 사무</u>
	<u>1의3. 법 제21조에 따른 맹견사</u>
	<u>육허가에 관한 사무</u>
<u><신 설></u>	<u>1의4. 법 제24조에 따른 기질평</u>
	<u>가에 관한 사무</u>
<u><신 설></u>	<u>1의5. 법 제31조에 따른 반려동</u>
	<u>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관</u>
	<u>한 사무</u>
<u><신 설></u>	<u>1의6.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u>
	<u>구조·보호 등에 관한 사무</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의2. 법 제70조에 따른 맹견취</u>
	<u>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u>
	<u>에 관한 사무</u>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621